



#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2호

Apr. 2026

## 보험 판례

보험설계사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

### 1. 사안의 개요

- 공소의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A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음
- 이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A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A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하였음
- 이에 검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이 A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함

### 2. 쟁점

-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서(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①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중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은 점, ②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이유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

- 그럼에도 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②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주체나 방법 등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③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사정뿐 아니라 ④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A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는 점을 부언하였음

#### 4.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임. 그러나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로서는 이에 관하여 유의가 필요함
  - "(보험설계사가 하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 이번 판결로 보험회사는 전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이용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